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. 31.

- 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
- 2.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민○희	1969.12.20.	광주광역시 광산구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구직촉진수당 신청서 2회 이상 미제출*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* 미제출 회차(지정일): 4~6회차('23.10.6, '23.11.6., '23.12.6.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

- 4. 공고기간 : 2024.1.31. ~ 2024.2.14.(15일간)
- 5.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0-8823-0575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광주광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경미(☎ 062-960-32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